
- '24. 11. 27 ~ 28. 대설피해 -

종합안내서

2024. 12. 19

화성시

재난대응과

목 차

I. 피해사실확인서, 간접지원내용

1. 분야별 문의처	4
2.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방법	4
3. 피해자 지원항목	5

II. 지원항목별 세부내용

1. 국세 납세유예	9
2. 지방세 등 감면 및 징수유예	10
3.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에외	11
4. 상하수도요금 감면	12
5. 피해주민 금융지원	13
6.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15
7.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16
8.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17
9. 국·공유재산, 국유림 사용료 등 감면	18
10.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19
11.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20
12. 과태료 징수 유예	21
13. 자동차·건설기계 검사기간 연장·유예	22
14. 심리정서 상담지원	23
15. 공공임대 주거 지원	24
<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 지원(16번부터 26번까지) >	
16. 건강보험료 감면	25
17. 전기요금 감면	26
18. 통신요금 감면	27
19. 도시가스요금 감면	28
20. 전파사용료 감면	29
21. 우체국 예금 수수료 등 면제	30
22. TV 수신료 면제 통신요금 감면	31
23.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32
24.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33
25.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34
26. 지역난방요금 감면	35

피해사실 확인서, 간접지원 내용

1

분야별 문의처 (담당부서)

분 야		화성시청 담당부서
총괄		· 재난대응과 (031-5189-2422, 3978, 2346, 3456, 1620)
정부지원금 관련	· 소상공인 피해	· 지역경제과(031-5189-7220)
	· 축산업 피해	· 축산정책과(031-5189-1825)
	· 농업 피해	· 농업정책과(031-5189-6974)
요금 감면	· 상수도	· 맑은물운영과(031-5189-3285)
	· 하수도	· 하수과(031-5189-6863)
발급 수수료 면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	· 민원행정과(031-5189-2648)
과태료 징수 유예	· 과태료 납부 기일 등 연기	· 징수과(031-5189-2196)
검사기간 연장 유예	· 자동차·건설기계 정기검사	· 차량등록과(031-5189-3312)

2

피해사실확인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등 발급방법

구분	발급처	구비서류	비고
피해사실 확인서	소관부서	· 피해자 본인 방문: 본인 신분증 · 피해자 가족 방문 : 방문자 신분증, 피해자와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재해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증	기업지원과	① 본인 신분증(영업주) ※ 피해신고서가 NDMS에 입력되고 피해사실이 확정된 경우 발급	

연번	지원항목	지원내용	담당기관 (연락처)	페이지
1	국세 납세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가가치세 신고,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 기한 연장(3.25.까지)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징수 집행 유예 신청시(1년) 	국세청 화성세무서 (031-8019-1200)	9
2	지방세 감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6개월, 최대 1년) 지방세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6개월, 최대 1년) 체납처분 유예(1년, 최대2년), 지방세외수입 부담 완화 	화성시 세정과 (031-5189-2182) 화성시 징수과 (031-5189-2195)	10
3	국민연금 납부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최대 1년) 연금보험료 연체금 징수예외 적용(6개월) 	국민연금공단 화성오산지사 (031-354-4663, 4665~6)	11
4	상하수도 요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하수도 요금 감면 	맑은물운영과 (031-5189-3285) 하수과 (031-5189-6863)	12
5	금융 지원	<p>농업(축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 농가에 대해 기존 ‘농업농촌진흥기금’ 용자이자 1% 전액 감면(최대 2년) * 신청 및 지원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시청) 용자이자 신청(NH농협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서류: 주민등록증, 피해증빙자료 <p>농협(농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자금 지원시 우대금리 2.0%(농업인 2.6%) 제공 (기업자금 5억원/가계자금 1억원) 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자납입 유예 기존대출 재약정 및 기한연기 예외 취급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유예(채무자 대출유형 확인) <p>NH농협손해보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료 및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3개월간 유예 	<p>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 (031-369-9000)</p> <p>농협손해보험 (1644-9000)</p>	13~ 14
		<p>일반은행 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2.0%(고정)</p> <p>중소기업진흥공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경영안전자금지원(재해중소기업지원) 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1.9%(고정) 경기신용보증재단 최대 5억원,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은행금리 이자보전(1.5% 지원) ※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책 [세부내용 15p 확인] 	<p>중소기업 진흥공단 정책자금 안내콜센터 (1811-3655) 경기신용 보증재단 (1577-5900)</p>	

연번	지원항목	지원내용	담당기관 (연락처)	페이지
6	보훈대상 위로금 지급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부 경기남부보훈지청 (031-259-1788)	15
7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건물·토지의 자연재해 피해복구를 위한 측량 시 해당 연도의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화성시 토지정보과 (031-5189- 1660) LX 화성지사 (031-8077- 0633)	16
8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경인지방병무청 (1588-9090)	17
9	국·공유재산, 국유림 사용료 등 감면	◦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등 감면 (피해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	해당 재산 운용·관리기관	18
10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 시 발급 수수료 면제	화성시 민원행정과 (031-5189- 2648)	19
11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화성세무서 (031-8019- 1200)	20
12	과태료 징수 유예	◦ 과태료 납부기일 등 연기(1년 이내)	화성시 징수과 (031-5189- 2196)	21
13	자동차·건설기계 검사기간 연장·유예	◦ 당해 자동차·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화성시 차량등록과 (031-5189- 3312)	22
14	심리정서 상담지원	◦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 가족 상담 등 지원	화성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031-352- 0175)	23
15	공공임대 주거 지원	◦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화성시 주택정책과 (031-5189- 3848)	24

연번	지원항목	지원내용 (특별재난선포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 항목)	담당기관 (연락처)	페이지
16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료 30~50% 경감 ◦ 세대경감 지원 	국민건강 보험공단 화성지사 (1577-1000)	25
17	전기요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점포 1개월분 요금 100% 면제 	한국전력공사 화성지사 (123)	26
18	통신요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전화 요금(세대당 1회선 12,500원) 감면(1개월) ◦ 시내·인터넷전화 요금(월이용요금100%) 감면(1개월) ◦ 초고속인터넷(월이용요금의 50%) 감면(1개월) ◦ 유료방송(기본료의 50%) 감면(1개월) 	각 통신사	27
19	도시가스 요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점포 1개월분 요금 100% 면제 	한국가스공사 (031-400- 7318)	28
20	전파사용료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분 100% 면제 	전파이용CS센터 (080-700- 0074)	29
21	우체국 예금·보험료 납입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복구를 위하여 설치된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발송하는 우편물 우편요금 무료 ◦ 피해자의 보험료 납입유예 및 예금 취급 수수료 면제 	화성우체국 (1599-1900) (1599-0100)	30
22	TV 수신료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1일부터 TV수신기 재설치시까지 면제 (직권등록말소) 	한국방송공사(1588-1801)	31
23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직업능력훈련 출결요건 완화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지원 	근로복지공단 (1588-0075)	32
24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화성시 허가민원과 (031-5189- 4287) (031-5189- 2629)	33
25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 징수 예의·체납 처분 유예(3~6개월 내) 	국민건강 보험공단 화성지사 (1577-1000)	34
26	지역난방요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한시적 요금 감면 	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 (031-8003- 1521~2)	35

※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는 병무청 제공 예정

지원항목별 세부내용

□ 지원근거

-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조의 2
-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제14조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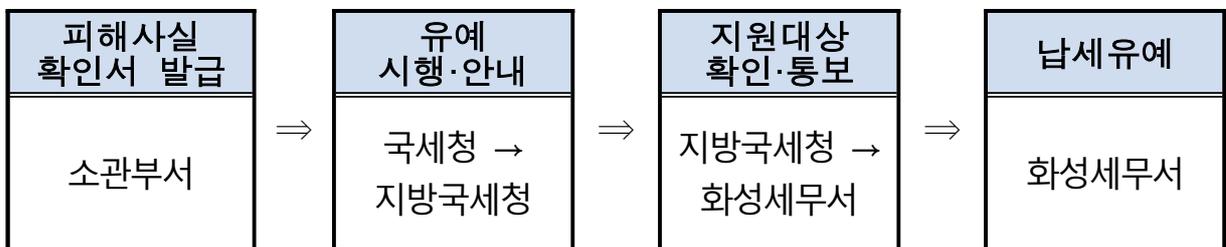
□ 지원대상

- 재난피해자 중 국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자 및 이미 고지 받은 국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 지원내용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고·납부하여야 할 국세가 있는 경우 신고·납부기한 연장 가능
- (징수 유예)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징수 집행 유예(1년 범위 내)

□ 지원절차



□ 접수방법

- 소관부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 세무서 방문 신청

□ 지원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25조
-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4조의3

□ 지원대상

- 천재지변 등으로 지방세 감면 또는 징수유예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내용

-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6개월, 최대 1년)
- 지방세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6개월, 최대 1년)
- 체납처분 유예(1년, 최대 2년), 지방세외수입 부담 완화

□ 지원절차

- (감면) 화성시에서 지방세감면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 시의회에서 의결 후 감면 지원
- (징수유예) 민원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방문, 팩스 등으로 화성시청 납세자보호관에 신청, 세목 담당 부서의견 조회 후 승인 여부 결정
- (체납처분 유예) 피해 사실이 확인된 납세자의 신청에 대하여 체납 처분유예

□ 지원근거

- 「국민연금법」 제91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0조

□ 지원대상

- 재난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자
 -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보조나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 지원내용

- 납부예외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 ※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보험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 ※ 납부예외 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 그 예외 사유의 종료 여부 확인
- 연금보험료 연체금 징수예외 적용 (6개월)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 지원근거

-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제34조, 제35조
-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
-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 지원대상

- (상수도) 특별재난지역 내 일부 해당 대상
- (하수도)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피해자)

□ 지원내용

- (상수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재산피해 정도가 심하여
요금을 납부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전액 감면
- (하수도) 전액면제 또는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등

※ 화성시 지방자치조례에 따름

□ 신청방법

- (상수도) 수도사용요금 감면신청서를[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하여
구비서류(피해사실확인서)와 함께 제출
- (하수도) 하수도요금 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구비서류(피해사실확인서)와 함께 제출

□ 복구자금용자

구분	지원항목	지원기준	관계법령
복구 자금 용자	축산업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축산업) - 피해 농가에 대해 기존 '농업농촌진흥기금' 용자이자 1% 전액 감면(최대 2년) * 신청 및 지원절차 1.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시청) 2. 용자이자 신청(NH농협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서류: 주민등록증, 피해증빙자료 	<p>「농어업재해대책법」</p> <p>「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농업) - 신규자금 지원시 우대금리 2.0%(농업인 2.6%) 제공 (기업자금 5억원/가계자금 1억원) - 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자납입 유예 - 기존대출 재약정 및 기한연기 예외 취급 -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유예(채무자 대출유형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H농협손해보험 - 보험료 및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3개월간 유예 	

※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031-369-9000) 및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책

※ 재해 관련 중소기업 지원기관 자금용자 안내 (재해중소기업 확인증발급)

지원주체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형식	지원내용	신청
경기신용 보증재단	특별경영자금 용자	재해확인증 발급 중소기업(소상공인)	은행연계 용자	(중소기업) 5억원 이내 대출 (대출금리에 1.5% 이자보전)	24.12.26 한 (25년 1월)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대출 (대출금리에 2.0% 이자보전)	
경기신용 보증재단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재해확인증 발급된 중소기업	보증지원	3억원 한도내에서 특별보증	25년 1월

▶ 경기도 재해 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용자 안내 (2024.12.26한 접수)

- 시행주체 : 경기신용보증재단 (전화 031-366-8070, 내선 109번,111번)
-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받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 대출기간 : 4년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취급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은행
- 용자한도 : (중소기업)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피해금액 범위내)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피해금액 범위내)
- 신청방법 : G머니시스템(<http://g-money.gg.go.kr>) 및 경기신보 영업점

▶ 중소기업진흥공단 긴급 경영자금 용자 안내

- 시행주체 : 중소기업진흥공단
-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받은 중소기업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취급금지 : 1.9% 고정금리 적용
- 용자한도 : 연간 10억원 이내.
- 신청일시 : 2025년 1월초 예상

□ 지원근거

- 「보훈기금법」 제5조 및 「보훈기금법 시행령」 제6조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국가보훈부 훈령)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

□ 지원내용

피해유형	피해기준	지원액(만원)
인명피해	보훈대상자 또는 그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의 사망·실종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부상	· 사망·실종 500 · 부상 30
주택피해	보훈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 주택의 전파·반파·침수	· 전파 500 · 반파 250 · 침수 50
기타 재산피해	보훈대상자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자경농경지, 농림·축·수산물 및 그 재배 등 경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또는 가재·도구 등 피해	· 피해금액 1,000만원 초과 시 50 · 피해금액 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시 30
공동이용 시설피해	국가유공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훈회관, 상이군경복지회관, 자활용사촌복지광장 등 공동이용시설 피해	· 피해금액 1,000만원 초과 시 500 · 피해금액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시 250

※ 인명·주택피해와 기타 재산피해가 동시에 발생하면 인명·주택피해에 대해서만 지급

□ 지원절차

- 피해신고(재난피해자) → 피해사실 확인(읍면동사무소) → 지원대상 확인·통보(보훈부 → 경기남부보훈지청) → 재해위로금 지급(경기남부보훈지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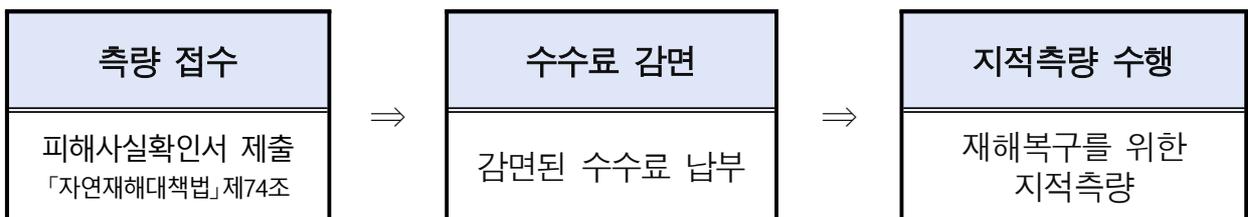
□ 지원근거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

□ 지원내용

- (목적) 자연재난 피해 주민의 피해 수습·복구 지원
- (내용)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감면율) 해당 연도 지적측량 수수료의 50%
- (대상) 자연재해로 발생된 건물·토지의 피해복구를 위한 측량,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의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 (제외) 재난 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경우

□ 지원절차



□ 신청절차

- 토지소유자 본인이 피해사실확인서를 아래로 제출하여 신청
 - * 화성시청 민원실 측량접수창구(☎031-5189-1660, 3018)
 - *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성지사 사무실(☎031-8077-0633, 0601)

□ 지원근거

- 「병역법」 제61조,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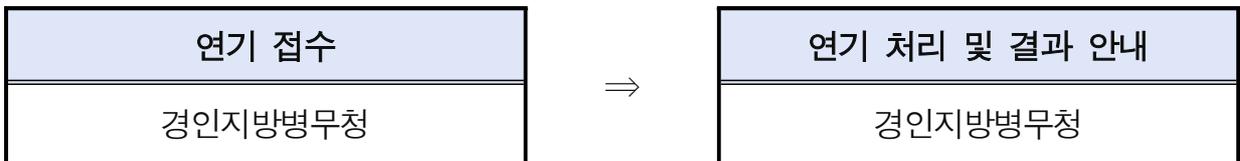
□ 지원대상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본인이나 가족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병역의무 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 지원내용

- 60일 범위 내에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일자, 사회복지무요원 소집일자,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연기
- ※ 연기원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전화로 연기 신청 가능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현역·상근입영, 사회복지무, 대체역중 선택 → 연기(원) 신청
-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전 지방병무청 유선 신청

□ 지원근거

- 「국유재산법」 제3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34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 지원대상

-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으로 해당 재산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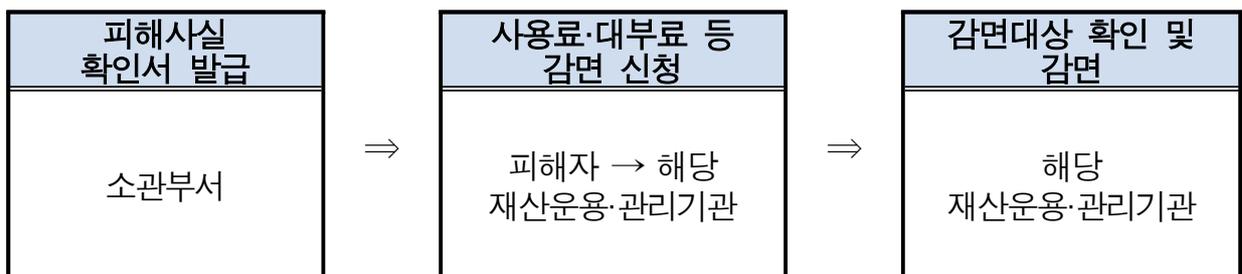
□ 지원내용

- 재난으로 사용 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구 분	공유재산	국유재산	국유림
허가대부기간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 만큼 허가기간 연장	-	-
사용료·대부료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면제	목적사업의 소득이 없거나 평년작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연도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신청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 필요

□ 지원절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대리발급 불가)

-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본인서명확인서발급 대상자 및 항목 신분 확인방법

* (내국인 / 재외국민) :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여권(+여권정보증명서),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국가보훈등록증 중 1]

* (외국인) : 본인

[외국인등록증(외국인사실증명서+여권),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거소사실증명서+여권)]

※ 매도용 본인서명확인서 발급

거래상대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주소를 기재

□ 지원내용

- 피해 신고를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 시 발급 수수료 면제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중

□ 지원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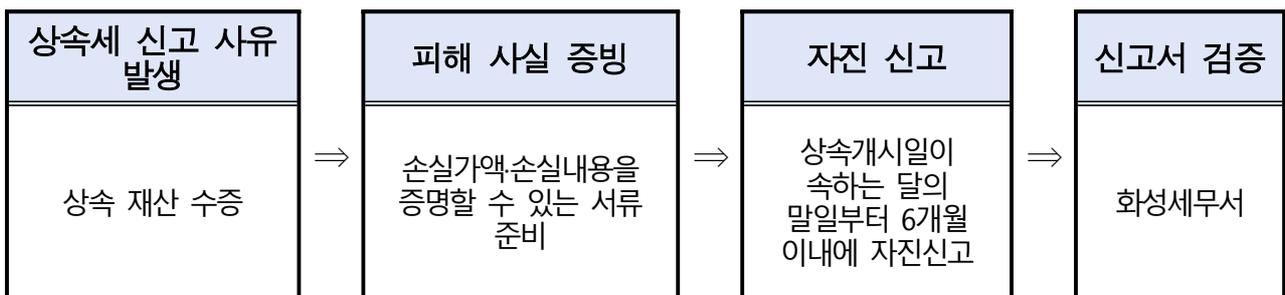
□ 지원대상

-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자
- 단,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에 의하여 그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지원내용

-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지원절차



□ 지원근거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4~1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동법 시행령 제7조의2~4

□ 지원대상

- 재난피해로 지방세외수입 납기·체납유예 등이 필요하다고 화성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과태료 납부기일 등 연기(1년 이내 범위)

□ 지원절차

- (납부기일 연기) 화성시청 부과 부서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한 후 추후 신청서 제출

□ **지원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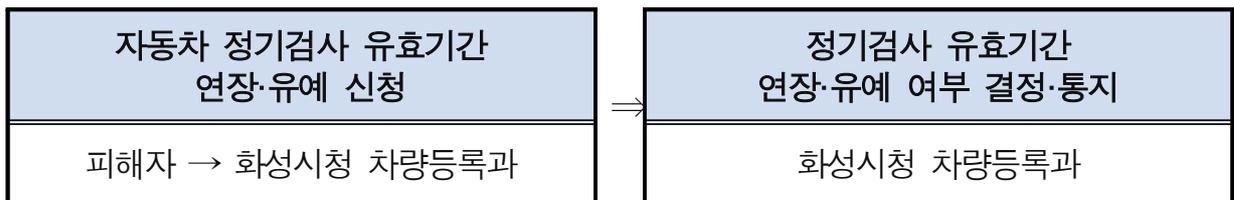
□ **지원대상**

- 천재지변(산불) 등 재난으로 자동차·건설기계의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동차 소유자

□ **지원내용**

- 당해 자동차·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 **지원절차**



□ 지원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 2·3·4

□ 지원대상

-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 양육, 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 지원내용

- 재난심리상담 지원 과정
 - 민원인 정신건강 평가 및 고위험군 선별 및 치료 연계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의뢰서 발급
 - 우울, 불안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 필요한 자

□ 지원절차

-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화를 통한 접수 후 방문상담 등 필요

□ 지원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 지원대상

-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재민

□ 지원내용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가구에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 지원절차

-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자 신청서 접수(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 필수)
 - 주택정책과- 지원대상자 명단 통보 → LH- 지원대상자 계약 및 입주안내, 계약체결 및 입주

□ 제출서류

- 공급신청서,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대설피해 관련 현장 확인내역

※ 화성시 매입임대 공가 수가 매우 적어,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음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지원

□ 지원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 및 제1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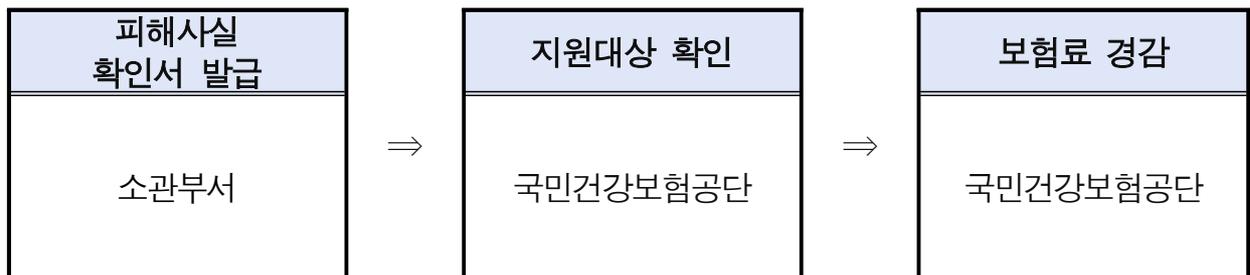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자연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 또는 사업장의 피해로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실제 생활이 어려운 세대

□ 지원내용

- 대설피해에 대한 건강보험료 30% ~ 50% 내 경감 지원

□ 지원절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지원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③ 6호
- 영업업무처리지침(한국전력공사 내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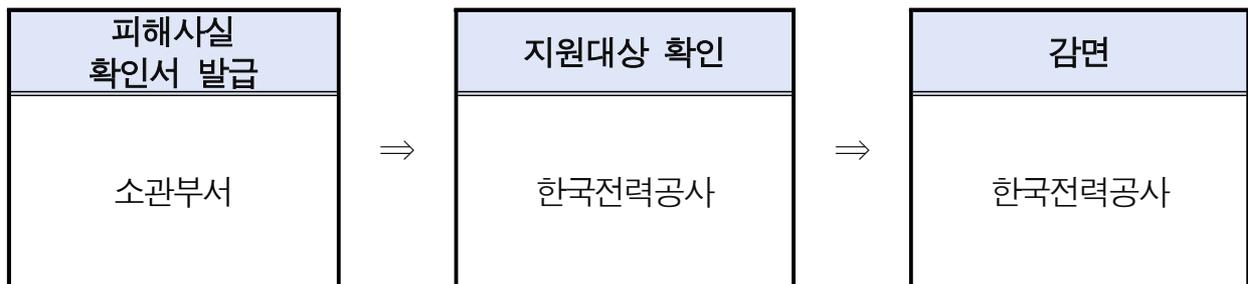
□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전력에 대해 지원

□ 지원내용

- 피해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 지원절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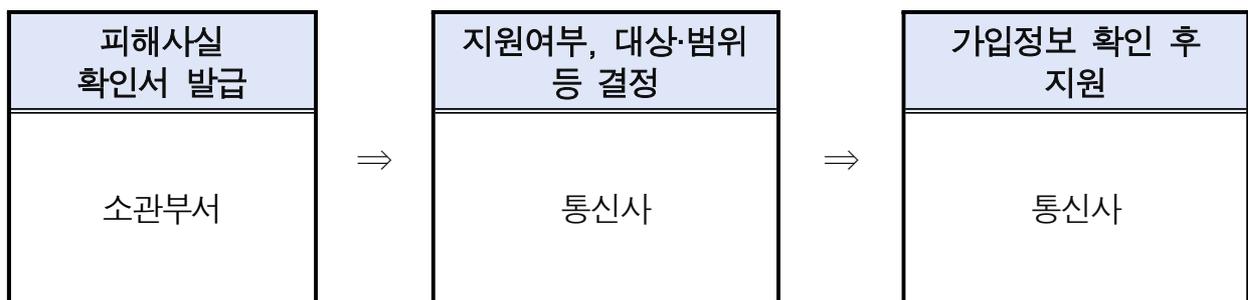
□ 지원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6조
 - ※ 감면여부 및 지원대상·기간·규모 등 감면규모는 이동통신사에서 재난규모,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 결정

□ 지원내용

- 이동전화 요금(세대당 1회선 최대 12,500원) 감면
- 시내·인터넷전화 요금(월이용요금 100%) 감면
- 초고속인터넷(월이용요금의 50%) 감면
- 유료방송(기본료의 50%) 감면
- ※ 각 이동통신사 별로 지원내용이 상이 할 수 있음

□ 지원절차



□ 신청절차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 통신사 문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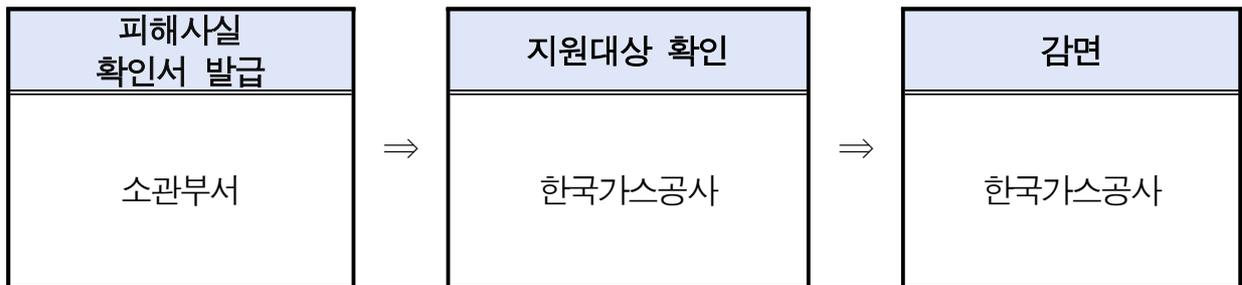
□ 지원근거

- 특별재난지역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산업통상자원부)
- 천연가스 공급규정(한국가스공사 내부규정)

□ 지원내용

- 피해 주택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 (취사 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월 등

□ 지원절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지원

□ 지원근거

- 「전파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기통신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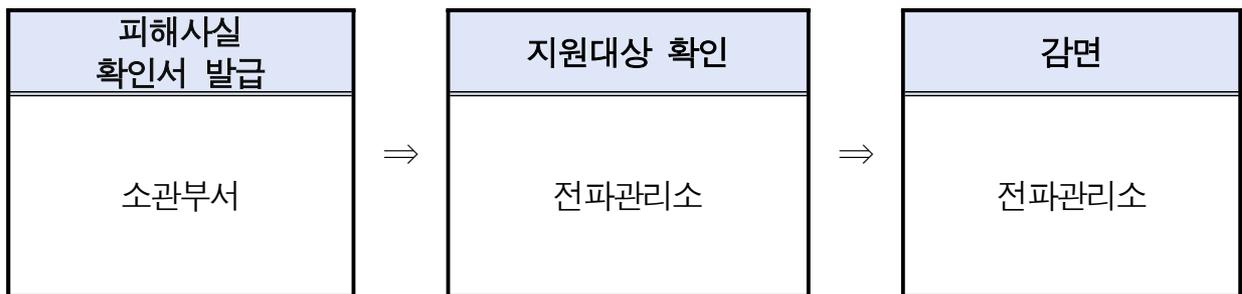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 등의 재난 피해자

□ 지원내용

- 피해지역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분 요금 100% 면제

□ 지원절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지원

□ 지원근거

- 「우편법」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105조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7조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6조, 제50조

□ 지원대상

- 재난지역의 우체국 고객

□ 지원내용

- 재해복구를 위하여 설치된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발송하는 우편물 우편요금 무료
 -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피해자의 보험료 납입유예 및 예금 취급 수수료 면제
- ※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공고하는 경우

□ 지원절차

- 지역 관할 우체국에서 일괄 처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지원

□ 지원근거

- 「방송법」 제64조
-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 등의 재난 피해자
- ※ 수신료 면제 여부와 기간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필요

□ 지원내용

- 특별재난지역 등의 피해 거주민이 소지한 TV 수상기 등의 수신료 일정기간(방통위 심의·의결로 설정)면제
- 기간 내 TV수신기 재설치 시까지 면제(직권등록말소)

□ 지원절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지원

□ 지원근거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0조의2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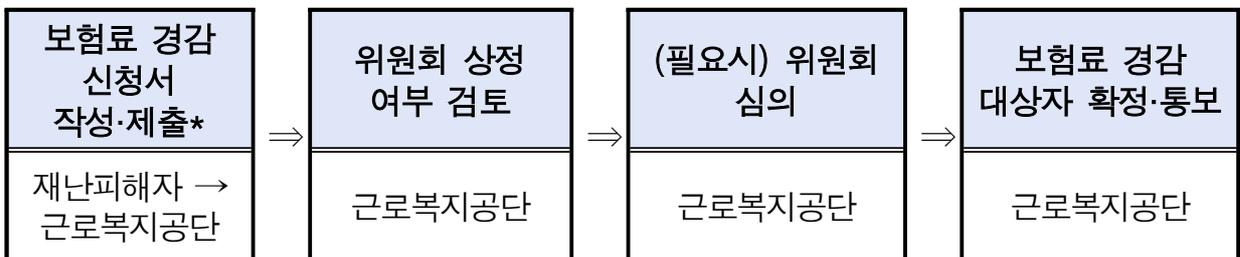
□ 지원대상

- 천재지변, 폭발 등 재난 피해를 입은 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 폭발 및 전쟁의 피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 등의 사유로 인해 보험료 경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경감 여부 결정

□ 지원내용

- 보험료 경감대상자가 가입한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의 30% 감면

□ 지원절차



- * 재난 등 보험료 경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경감신청서(「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 및 경감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지원

□ 지원근거

- 「농지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시행령 별표 2)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 등의 재난 피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안의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복구를 위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되는 새로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득하여 신축·증축 또는 이축하는 *단독주택부지 농지보전부담금 면제(감면)

*부지 총 면적이 660m²이하인 경우만 해당

*기존대지에 신축·증축·이축은 해당없음

□ 신청방법

- 화성시청 허가민원과, 건축정책과에 농지전용허가(협의) 신청

* 건축, 토목 관련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이 필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지원

□ 지원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 지원대상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재난피해자 중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대상자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 징수예외(3~6개월 내)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신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지원

□ 지원근거

- 「열공급규정」 (난방공사 내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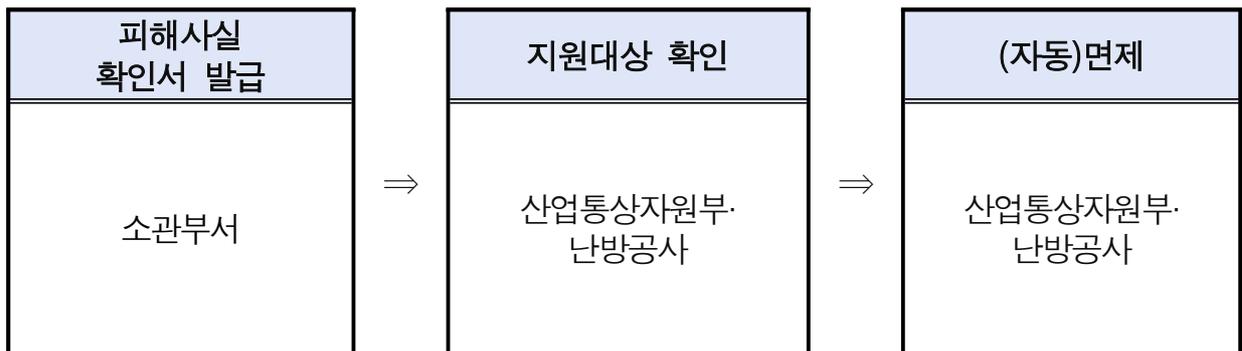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 등의 재난 피해자

□ 지원내용

- 기계실(열사용시설) 멸실·파손·침수로 인하여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한시적 요금 감면

□ 지원절차



연 번	건의 항목	건의 사항	소관부처 (기관)	검토결과
1	피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DMS 입력기간 연장 요청, 12.8.(일) → 12.15.(일) ⇒ 피해신고 대비 현장조사율(16.8%, 12.6.기준)이 낮아 추가 조사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기간 연장 (~12.13.) 	행안부 복구지원과	수용(완료)
2	특별재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농가에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아직 피해금액이 선포 기준에 맞지 않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피해조사 마무리 예정 ⇒ 현재 중앙합동조사 진행 중으로 피해금액이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선포 예정 	행안부 복구지원과	수용(진행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재난지역 조속 지정 ⇒ 현재 중앙합동조사 진행 중으로 피해금액이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선포 예정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수용(진행중)
3	응급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 신축하려고 하는데 철거라도 빨리 진행했으면 함 ⇒ 농·축업을 통해 굴삭기·화물차 등 중장비 지원과 자원봉사자 등 인력지원 등을 추진. 또한, 지자체에 건축물관리법령에 따른 해체신고 등 철거 관련 절차 등을 농가에 안내 필요 	농림부 재해보험정책과	수용(진행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시설 복구 군부대 인력지원의 연속성 유지 필요 - 사과나무, 포도나무 등의 농장을 철거하는데 전문인력 필요 ⇒ 2개 부대에서 피해현장 투입 중, 추가 병력 필요시 경기도에서 추가 협조 요청 예정 	행안부 재난자원관리과	수용(진행중)

연 번	건의 항목	건의사항	소관부처 (기관)	검토결과
4	폐기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원 기준 마련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피해지역과 달리 스티로폼, 콘크리트, 전선 등 철거에 시간이 오래 걸리며, 처리비용도 많이 듦 * 비닐을 제거하고 고철만 고물상에서 수거해가면 비용이 적게 드는데, 그렇게 하려면 철거 장비도 들어가야 해서 포도나무 훼손될 수 밖에 없어 농가에서 직접 비닐을 제거하는것은 쉽지 않아 나무절단 할 수 밖에 없음 ⇒ (농업분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재난지수의 10%를 재난지원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행안부와 협의 완료(12.2.) ⇒ (재해쓰레기)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해쓰레기에 대해서 국비 지원 예정 ⇒ (철거방식) 농장주와 지자체가 철거방식 협의하여 추진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부 재해보험정책 과</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부 생활폐기물과</p>	수용(진행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예시설·축사 철거 비용 지원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재난지수의 10%를 재난지원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행안부와 협의 완료(12.2) 	농림부 원예경영과	수용(진행중)
5	가축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 폐사 렌더링(rendering)* 비용 지원 ⇒ 가축재해보험으로 렌더링 비용 지원 중(손해액의 10% 추가 지원), 소의 경우 절박우 도축 후 판매 가능 ※ '24년 10월 말 기준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94.4%로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보험을 통해 렌더링 비용 지원 가능 (가축재해보험 보험금 수령 시 재해대책비 중복 지급 불가) 	농림부 축산경영과	수용(진행중)

연 번	건의 항목	건의사항	소관부처 (기관)	검토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가 멸실되어 담보제공이 안되고, 대출도 불투명, 무이자 대출 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전액 용자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들의 담보능력이 없음. 기존 토지 및 건축물로 담보대출이 잡혀있음. 농신보 한도를 2억원 보다 상향해야 대출이 가능한 형편 * 축사 재건축과 가축 입식 비용에 대한 용자 지원(재건축·입식까지 소득이 없어 무이자 용자 희망) ⇒ 재해 피해농가에 대해 보증비율을 100%(통상 85%)로 상향 운영중, 보증한도(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도 최대 5억원까지 추가 적용중 	농림부 농업금융정책 과	기시행
6	금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기업 복구지원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특례보증/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기존대출 상환기간 연장(3년), 신규대출 심사기준 완화) ⇒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가능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4년 예산 소진으로 지원이 어려운 상황('25. 1월부터 지원 가능) -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 대출기준 완화 및 정책대출 확대 (한도상향, 이자감면 등) ⇒ 재해 피해농가에 대해 보증비율을 100%(통상 85%)로 상향 운영중, 보증한도(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도 최대 5억원까지 추가 적용중 	중소벤처기업부 비상재난담당관 농림부 농업금융정책과	기시행

연 번	건의 항목	건의사항	소관부처 (기관)	검토결과
6	금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농가 영농복귀를 위한 지원 사업시 자부담 비율 감소 및 100% 무이자 용자 지원금 확대 ⇒ 재해대책 경영안정자금(연금리 1.5%, 5년거치 10년상환) 운영중	농림부 재해보험정책 과	기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대출 기준 완화 ⇒ 재해 피해농가에 대해 보증비율을 100%(통상 85%)로 상향 운영중, 보증한도(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도 최대 5억원까지 추가 적용중	농림부 농업금융정책 과	기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정책자금·축산정책자금(사료자금 등) 상환유예(최소 3년 이상) 및 이자 감면 ⇒ 현재 농가단위 피해율 30~50%, 1년, 50%이상 2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면제) 운영중	농림부 재해보험정책 과	기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 재해대책 경영안정자금(연금리 1.5%, 5년거치 10년상환)을 운영중	농림부 재해보험정책 과	기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자재 구입 등을 위한 영농 운전을 위한 재해대책 경영자금 지원(국비, 도비) - 피해 농가 회복을 위한 경영비 지원(3년분) ⇒ 재해대책경영안정자금을 일반작물은 1년, 과수 등은 3년까지 지원중	농림부 재해보험정책 과	기시행

연 번	건의 항목	건의사항	소관부처 (기관)	검토결과
7	재해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대상 시설범위 확대 필요(하우스는 보험 대상이나, 하우스 관리동은 보험 대상에 미포함) ⇒ (재난지원금) 시설하우스 관리동(농자재 보관용 등)은 시설하우스와 동일하게 설치한 것으로 시설하우스 면적에 포함하여 복구비를 산출하여 지원 가능 ⇒ (재해보험) 하우스 관리동은 농막, 컨테이너, 하우스 등 형태가 다양하며, 농가별로 활용방식도 달라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한 보장은 신중 검토 필요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 과	기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은 가입하였지만 건물만 보상되고 포도나무는 보험가입에 대한 안내가 없어 보험 미가입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됨 ⇒ 보험 미가입된 포도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향후 보험가입 시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에 대해서도 지역농협에서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겠음 	농림부 재해보험정책 과 농협손해보험	수용(진행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보험은 가입 권장을 많이 해서 가입 했지만, 풍수해 같은 보험은 권장도 안하고 처음에 드는 비용도 비싸고 소멸성이어서 많이 가입하지 않음 ⇒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 검토 	농림부 재해보험정책 과	수용(진행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가축 및 시설물 모두 보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사전 안내 필요 ※ 시설물 보상에 대한 안내가 없어 미가입, 시설물 피해는 보상을 받지 못함 ⇒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 검토 	농림부 재해보험정책 과	수용(진행중)

연 번	건의 항목	건의사항	소관부처 (기관)	검토결과
8	재난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 소유주와 경작자(임차농)가 다른 경우 재난지원금을 임차농에게 지급할 필요 ⇒ 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은 소유자에게, 농작물과 생계비 지원은 실경작자에게 지급. 다만, 소유자의 주생계수단 등 확인 필요 아울러, 소유자가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시군에서 농지법에 따라 농지 처분 등 조치 필요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 과	기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 지렁이, 염소 등 가축 사육시설 지원 여부 ⇒ 대가축, 중가축, 소가축에 준하는 해당 축사를 적용하여 복구비를 산출하여 지원 가능 	농림부 축산경영과	기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하우스 관리동(농자재 보관용 등)에 대한 복구비 지원 여부 ⇒ 시설하우스 관리동(농자재 보관용 등)은 시설하우스와 동일하게 설치한 것으로 시설하우스 면적에 포함하여 복구비를 산출하여 지원 가능 	농림부 원예경영과	기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비 단가에 포함되지 않은 화훼 등 농작물의 복구비 지원 여부 ⇒ 복구비 단가에 설정되지 않은 품목은 유사품목으로 복구비를 산출하여 지원 가능 	농림부 원예경영과	기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콩나물 재배사가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여부 ⇒ 콩나물 재배도 농업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재배사의 형태(판넬, 하우스 철재 구조물)에 따라 유사항목을 적용하여 지원 가능 	농림부 원예경영과	기시행